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 한국대부 금융협회
	보도	2018. 5. 15.(화) 석간	배포	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	여신금융감독국 서민중소기업지원실	김동궁 국장(3145-7550), 전광준 팀장(3145-7435) 성수용 실장(3145-8410), 김범수 팀장(3145-8412)
	대부금융협회	기획조사부	이재선 사무국장(6710-0803), 서영완 부장 (6710-0810)

제 목 :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

- '16.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(금융위/지자체) 이후 금융위(원)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*

*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수(개사) : ('16.12) 851 → ('17.12) 1,259 → ('18.4) 1,404

-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(대부잔액 16.5조원)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

대부 이용·민원 현황

구 분*	'15년	'16년	'17년
대출 잔액(조원)	13.2	14.6	16.5
대부이용자(만명)	267.9	250.0	247.3
민원 처리(건수)	1,118	1,900	3,005

* 대출잔액·대부이용자수(대부업 실태조사), 민원처리건수(금감원 접수) 기준

-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
 -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(10개)을 선정하고
 -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·배포하는 한편,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(5월중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

1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

① 금융위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

-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「파인」에서 확인 후 이용

☞ 조회 : 「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」 - 금융회사 -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

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

-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
-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(24.0%*)를 초과할 수 없고,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

* ('14.4.2) 34.9% → ('16.3.3) 27.9% → ('18.2.8) 24.0%

☞ 이자율계산방법(<참고2>) : 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 - 서민금융1332 - 불법금융대응

☞ 무료법률상담 :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, www.klac.or.kr)

☞ 신고 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 및 경찰서

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

-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*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,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

*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(등록증, 대출이자율, 이자계산방법, 상환방법, 연체이자율, 대부업등록번호)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

-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(대출금액, 대출이자율, 상환기간, 연체이자율)을 자필로 작성*해야 함

* (대면) 중요사항 자필서명, (비대면)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

4]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

- 대출중개수수료(수수료,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)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,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

☞ 중개수수료 요청시 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에 신고

2]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

5]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

-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(계약서, 상환확인증 등)를 반드시 보관하고,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

6]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

-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,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

☞ 무료법률상담 :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, 홈페이지 www.klac.or.kr)

7]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

-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*하여야 함

*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

-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

☞ 조회(<참고3>) : 「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」 - 공통 - 채권자변동조회

3

기타 유의사항

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

- 연 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, 신용등급을 확인(조회)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

☞ 확인 :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」 - 공통 - 신용정보조회

- 서민정책 금융상품* (새희망홀씨 등)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

* <참고4> 「서민정책 금융상품」 참조

☞ 문의 : (인터넷)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」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, (전화) 서민금융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97), (방문)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
9 채무조정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제도를 적극 활용

- 정상적인 대출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*를 적극 이용하고,

* <참고5> 「채무조정제도 개요」 참조

-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 신청 가능

☞ 상담 : (국민행복기금, 워크아웃)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(1397), (개인회생·파산워크아웃)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, www.klac.or.kr)

10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

-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불법채권 추심*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·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

*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: 제9조(폭행·협박 등의 금지), 제10조(개인정보의 누설금지), 제11조(거짓표시의 금지), 제12조(불공정한 행위의 금지)

☞ 신고 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 및 관할 경찰서 신고

참고1

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·문의처

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에 접속



☐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·문의처

구분	상담·문의처	전화	인터넷
신용정보조회	한국신용정보원	1544-6640	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신용정보조회
서민정책금융상품	서민금융진흥원	1397	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
대부업 등록여부 조회	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	1332	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
이자계산기	금융감독원	1332	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서민금융1332
무료법률상담	대한법률구조공단	132	대한법률구조공단 (www.klac.or.kr)
불법대부·채권추심 신고	금융감독원	1332	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불법금융SOS
채권자변동조회	금융감독원	1332	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채권자변동조회
채무조정	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	서민금융진흥원	서민금융통합콜센터 (www.kinfa.or.kr)
	개인회생 개인파산	대한법률구조공단	대한법률구조공단 (www.klac.or.kr)
	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	서민금융진흥원	서민금융통합콜센터 (www.kinfa.or.kr)
	민원·분쟁 신청	금융감독원	1332 파인(http://fine.fss.or.kr) - e-금융민원센터

참고2

이자를 계산방법(이자계산기)

- 1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(<http://fine.fss.or.kr>)에 접속하여 “서민금융 1332(www.fss.or.kr/s1332)” 조회 및 “불법금융대응 - 이자계산기” 클릭
- 2 이자계산기에 대출상환조건(상환횟수, 1회 상환 원리금, 납입주기, 원금)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 확인 가능

[예시1 : 일수기준 연이율 산출]

●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

[예시] 대출원금 1,000,000원을 10일마다 103,652원씩 10회 상환하는 경우 연이자율 계산

→ 상환 횟수에 "10", 1회 상환원리금에 "103,652", 납입주기에 "10", 원금에 "1,000,000"을 입력하고 "계산하기"를 클릭하면 연이자율 24.0%가 계산됨

상환 횟수	10	← 정보 입력
1회 상환원리금	103,652	
납입주기	10	
원금	1,000,000	← 클릭
연이자율	24.0%	

[예시2 : 월수기준 연이율 산출]

● 월수기준 연이자율 산출

[예시] 대출원금 1,000,000원을 1년간 94,560원씩 12회 상환하는 경우 연이자율 계산

→ 상환 횟수에 "12", 매월 상환원리금에 "94,560", 원금에 "1,000,000"을 입력하고 "계산하기"를 클릭하면 연이자율 24.0%가 계산됨

상환 횟수	12	← 정보 입력
매월 상환원리금	94,560	
원금	1,000,000	← 클릭
연이자율	24.0%	

참고3

‘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’ 화면(예시)

□ 금융회사 등(대부업 포함)이 대출채권을 매각·매입하는 경우 채권자 변동정보*를 등록·관리토록 규정(신용정보법 §25)

* 신용정보원, 신용조회회사, 신용회복위원회의 온·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 가능(정보집중 대상 : 금융회사,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자산유동화회사 등)

○ 한국신용정보원(www.credit4u.or.kr)은 채무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‘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’을 운영 중(17.4.1~)

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화면

< 최초 시행시 : '17.4월 >

순번	최초 대출일자	최종 채권기관	양도시 채권금액 (천원)	양도일자	양도사유	직전 채권기관	최초 채권기관	소멸시효 완성여부
1	161001	A 은행	5,000	-	-	-	A 은행	X
2	140110	가 자산유동화	3,000	161101	자산유동화	나 은행	나 은행	X
3	120916	갑 캐피탈	3,000	160901	채권매각	병 저축은행	을 은행	X

< 특정시점 조회시 : (예)'21.4월 >

순번	최초 대출일자	최종 채권기관	양도시 채권금액 (천원)	양도일자	양도사유	직전 채권기관	최초 채권기관	소멸시효 완성여부	
1	1-1	161001	A 은행	5,000	-	-	A 은행	X	
	1-2	161001	B 자산유동화	5,000	171001	자산유동화	A 은행	X	
	1-3	161001	C 캐피탈	5,000	180103	채권매각	B 자산유동화	X	
2	2-1	140110	가 자산유동화	3,000	161101	자산유동화	나 은행	X	
	2-2	140110	다 대부	3,000	181101	채권매각	가 자산유동화	X	
	2-3	140110	라 대부	3,000	190101	합병	다 대부	X	
3	3-1	120916	갑 캐피탈	2,000	160901	채권매각	병 저축은행	을 은행	O

☞ 조회 :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」 - 공통 - 채권자변동조회

참고4

서민정책 금융상품 현황

□ 서민정책 금융상품 주요내용

구분	새희망홀씨	햇살론	바꿔드림론	미소금융	안전망대출
대출 대상	6 ~ 10등급 (45백만원 이하) 연소득 35백만원 이하			6 ~ 10등급, 기초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 이하	24% 초과 대출 이용 & 만기가 3개월 이내 저신용·저소득자* *소득 3,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고 소득 4,500 만원 이하
이자율	연 10.5% 이하	연 10.5% 이하 (보증료 포함)	연 6.5 ~ 10.5% 이하(보증료 포함)	연 2.5 ~ 4.5%	연 12 ~ 24%
주요 자금 대출 한도	3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계자금 : 1,500만원 운영자금 : 2,000만원 창업자금 : 5,000만원 대환자금 : 3,000만원 	3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·시설개선자금: 각 2,000만원 창업자금: 7,0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: 2,000만원(신규취급 중단 '18.3.1.) 대학생·청년햇살론: 1,2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24%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
취급 기관	국내은행	저축은행, 농협조합·수협조합·신협조합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	캠코 및 국내은행	미소금융지점	은행
지원 방식	대출	보증부 대출	보증부 대출	대출	대출

* 세부 상품내용 :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

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·연락처

접근경로	명 칭	상담·연락처
유선	1397 콜센터	1397
인터넷	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	www.kinfa.or.kr
대면상담	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	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☞ 위치 :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

채무조정제도 개념

-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채무조정제도 체계

구분	신용회복위원회		법원		한국자산 관리공사
지 원 내 용	프리 워크아웃	개인 워크아웃	개인회생	개인파산	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조 정 대 상	「신용회복지원협약」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		제한 없음		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
지 원 대 상	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	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	과다채무 "급여소득자" 또는 "영업소득자"	파산원인 해당자	매입 보유채권

제도 이용 문의처

- (국민행복기금)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(1397, www.kinfa.or.kr)
- (워크아웃)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, www.cyber.ccrs.or.kr)
- (개인회생·파산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, www.klac.or.kr)